

산업안전보건법 개정 설명 및 정책방향

2020. 1. 30.

고용노동부 안전지청
박형수



말씀드릴 순서

- I. 산업안전보건법 개정 설명
- II. 정책방향

I. 산업안전보건법 개정 설명

0. 산업안전보건법령 개정내용 자료 게시

◆ 고용노동부 안전지청 홈페이지

⇒ 화면 상단에 “정보공개” 클릭

⇒ “부서별 자료실” 클릭

⇒ 연번 “703~705번” 에 있음

I. 산업안전보건법령의 이해

산업안전보건법령

1개 법률, 1개 시행령, 3개 시행규칙으로 구성 (조문 수는 **1,226**개 ← 1,149개)

- 산업안전보건**법**: 1981. 12. 31. 제정, 9장 **175**개 조문
(법률 제16272호, 2019. 1. 15. 전부개정)
- 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 1982. 8. 9. 제정, 11장 **119**개 조문
(대통령령 제30256호, 2019. 12. 24. 전부개정)
- 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 1982. 10. 9. 제정, 11장 **243**개 조문
(고용노동부령 제272호, 2019. 12. 26. 전부개정)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2011. 7. 6. 제정, 3편 **677**개 조문
(고용노동부령 제273호, 2019. 12. 26. 일부개정)
- 유해·위험작업의 **취업제한**에 관한 **규칙**: 1992. 3. 21. 제정, **12**개 조문
(고용노동부령 제274호, 2019. 12. 26. 일부개정)

2.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2019.1.15. 공포, 2020.1.16. 시행)

* 법률 = 본칙(총칙, 실칙, 보칙, 벌칙) + 부칙

현행	전부 개정법률
총 9장으로 구성	총 12장으로 구성
제1장 총칙	제1장 총칙(원칙적, 기본적, 총괄적 사항 기재)
제2장 안전·보건관리체계	제2장 안전보건관리체계 등
제3장 안전보건관리규정	※ 안전보건관리규정 흡수
제4장 유해·위험 예방조치 → 제4장에 다수 조항이 과도하게 집중	제3장 안전보건교육 제4장 유해·위험방지 조치 → 현행 법률 제4장을 내용별로 분리(제4장~제7장)
제5장 근로자의 보건관리	제5장 도급 시 산업재해 예방
제6장 감독과 명령	제6장 유해·위험 기계 등에 대한 조치
제6장의2 산업안전지도사 및 산업보건지도사	제7장 유해·위험물질에 대한 조치
제7장 삭제	제8장 근로자의 보건관리
제8장 보칙	제9장 산업안전지도사 및 산업보건지도사
제9장 벌칙	제10장 근로감독관 등
부칙	제11장 보칙(절차적, 기술적, 보완적 사항 기재)
	제12장 벌칙
	부칙(시행일, 유효기간, 적용례, 경과조치 기재)

2.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2019.1.15. 공포, 2020.1.16. 시행)

제1장 총칙(제1조 ~ 제13조)

제1조(목적)

제2조(정의): 산업재해, 도급, 도급인, 수급인, 관계수급인, 건설공사발주자 등 새롭게 정의

제3조(적용 범위)

제4조(정부의 책무): 직장 내 괴롭힘 예방을 위한 조치기준 마련, 지도 및 지원(추가)

제5조(사업주 등의 의무):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앱 배달 종사자로부터 노무를 제공하는 자(추가)

제6조(근로자의 의무)

제7조(산업재해 예방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공표)

제8조(협조 요청 등)

제9조(산업재해 예방 통합정보시스템 구축·운영 등)

제10조(산업재해 발생건수 등의 공표)

제11조(산업재해 예방시설의 설치·운영)

제12조(산업재해 예방의 재원)

제13조(기술 또는 작업환경에 관한 표준)

2.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2019.1.15. 공포, 2020.1.16. 시행)

제2장 안전보건관리체계 등(제14조 ~ 제28조)

제1절 안전보건관리체계(제14조 ~ 제24조)

제14조(이사회 보고 및 승인 등)

제15조(안전보건관리책임자)

제16조(관리감독자)

제17조(안전관리자)

제18조(보건관리자)

제19조(안전보건관리담당자)

제20조(안전관리자 등의 지도·조언)

제21조(안전관리전문기관 등)

제22조(산업보건역)

제23조(명예산업안전감독관)

제24조(산업안전보건위원회)

2.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2019.1.15. 공포, 2020.1.16. 시행)

제2절 안전보건관리규정(제25조 ~ 제28조)

제25조(안전보건관리규정의 작성)

제26조(안전보건관리규정의 작성·변경 절차)

제27조(안전보건관리규정의 준수)

제28조(다른 법률의 준용)

제3장 안전보건교육(제29조 ~ 제33조)

제29조(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

제30조(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의 면제 등)

제31조(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

제32조(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에 대한 직무교육)

제33조(안전보건교육기관)

2.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2019.1.15. 공포, 2020.1.16. 시행)

제4장 유해·위험 방지 조치(제34조 ~ 제57조)

제34조(법령 요지 등의 게시 등)

제35조(근로자대표의 통지 요청)

제36조(위험성평가의 실시) ★

제37조(안전보건표지의 설치·부착): 해당 외국인근로자의 모국어로 작성(추가)

제38조(안전조치) ★

제39조(보건조치) ★

제40조(근로자의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준수)

제41조(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건강장애 예방조치)

제42조(유해위험방지계획서의 작성·제출 등)

제43조(유해위험방지계획서 이행의 확인 등)

2.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2019.1.15. 공포, 2020.1.16. 시행)

제44조(공정안전보고서의 작성·제출)★

제45조(공정안전보고서의 심사 등)

제46조(공정안전보고서의 이행 등)

제47조(안전보건진단)

제48조(안전보건진단기관)

제49조(안전보건개선계획의 수립·시행 명령)

제50조(안전보건개선계획서의 제출 등)

제51조(사업주의 작업중지)

제52조(근로자의 작업중지)

제53조(고용노동부장관의 시정조치 등)

제54조(중대재해 발생 시 사업주의 조치)

제55조(중대재해 발생 시 고용노동부장관의 작업중지 조치)★

제56조(중대재해 원인조사 등)

제57조(산업재해 발생 은폐 금지 및 보고 등)

2.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2019.1.15. 공포, 2020.1.16. 시행)

제5장 도급 시의 산업재해 예방(제58조 ~ 제79조)

제1절 도급의 제한(제58조 ~ 제61조)

제58조(유해한 작업의 도급금지)

제59조(도급의 승인)

제60조(도급의 승인 시 하도급 금지)

제61조(적격 수급인 선정 의무)

제2절 도급인의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제62조 ~ 제66조)

제62조(안전보건총괄책임자)

제63조(도급인의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제64조(도급에 따른 산업재해 예방조치)

제65조(도급인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정보 제공 등)

제66조(도급인의 관계수급인에 대한 시정조치)

2.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2019.1.15. 공포, 2020.1.16. 시행)

제3절 건설업 등의 산업재해 예방(제67조 ~ 제76조)

제67조(건설공사발주자의 산업재해 예방 조치)

제68조(안전보건조정사)

제69조(공사기간 단축 및 공법변경 금지)

제70조(건설공사 기간의 연장)

제71조(설계변경의 요청)

제72조(건설공사 등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등)

제73조(건설공사의 산업재해 예방 지도)

제74조(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

제75조(안전 및 보건에 관한 협의체 구성 · 운영에 관한 특례)

제76조(기계 · 기구 등에 대한 건설공사도급인의 안전조치)

2.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2019.1.15. 공포, 2020.1.16. 시행)

제4절 그 밖의 고용형태에서의 산업재해 예방(제77조 ~ 제79조)

제77조(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등)

제78조(배달종사자에 대한 안전조치)

제79조(가맹본부의 산업재해 예방 조치)

제6장 유해·위험 기계 등에 대한 조치(제80조 ~ 제103조)

제1절 유해하거나 위험한 기계 등에 대한 방호조치 등(제80조~제82조)

제80조(유해하거나 위험한 기계·기구에 대한 방호조치)

제81조(기계·기구 등의 대여자 등의 조치)

제82조(타워크레인 설치·해체업의 등록 등)

제2절 안전인증(제83조~제88조)

제83조(안전인증기준)

제84조(안전인증)

2.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2019.1.15. 공포, 2020.1.16. 시행)

제85조(안전인증의 표시 등)

제86조(안전인증의 취소 등)

제87조(안전인증대상기계등의 제조 등의 금지 등)

제88조(안전인증기관)

제3절 자율안전확인신고(제89조 ~ 제92조)

제89조(자율안전확인신고)

제90조(자율안전확인표시 등)

제91조(자율안전확인표시의 사용 금지 등)

제92조(자율안전확인대상기계등의 제조 등의 금지 등)

제4절 안전검사(제93조 ~ 제100조)

제93조(안전검사)

제94조(안전검사합격증명서 발급 등)

2.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2019.1.15. 공포, 2020.1.16. 시행)

제95조(안전검사대상기계등의 사용 금지)

제96조(안전검사기관)

제97조(안전검사기관의 보고의무)

제98조(자율검사프로그램에 따른 안전검사)

제99조(자율검사프로그램 인정의 취소 등)

제100조(자율안전검사기관)

제5절 유해·위험기계등의 조사 및 지원 등(제101조 ~ 제103조)

제101조(성능시험 등)

제102조(유해·위험기계등 제조사업 등의 지원)

제103조(유해·위험기계등의 안전 관련 정보의 종합관리)

2.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2019.1.15. 공포, 2020.1.16. 시행)

제7장 유해·위험물질에 대한 조치(제104조 ~ 제124조)

제1절 유해·위험물질의 분류 및 관리(제104조 ~ 제118조)

제104조(유해인자의 분류기준)

제105조(유해인자의 유해성·위험성 평가 및 관리)

제106조(유해인자의 노출기준 설정)

제107조(유해인자 허용기준의 준수)

제108조(신규화학물질의 유해성·위험성 조사)

제109조(중대한 건강장애 우려 화학물질의 유해성·위험성 조사)

제110조(물질안전보건자료의 작성 및 제출)

제111조(물질안전보건자료의 제공)

제112조(물질안전보건자료의 일부 비공개 승인 등)

제113조(국외제조사가 선임한 자에 의한 정보 제출 등)

제114조(물질안전보건자료의 게시 및 교육)

2.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2019.1.15. 공포, 2020.1.16. 시행)

제115조(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 용기 등의 경고표시)

제116조(물질안전보건자료와 관련된 자료의 제공)

제117조(유해·위험물질의 제조 등 금지)

제118조(유해·위험물질의 제조 등 허가)

제2절 석면에 대한 조치(제119조 ~ 124조)

제119조(석면조사)

제120조(석면조사기관)

제121조(석면해체·제거업의 등록 등)

제122조(석면의 해체·제거)

제123조(석면해체·제거 작업기준의 준수)

제124조(석면농도기준의 준수)

2.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2019.1.15. 공포, 2020.1.16. 시행)

제8장 근로자 보건관리(제125조 ~ 제141조)

제1절 근로환경의 개선(제125조 ~ 제128조)

제125조(작업환경측정)

제126조(작업환경측정기관)

제127조(작업환경측정 신뢰성 평가)

제128조(작업환경전문연구기관의 지정)

제2절 건강진단 및 건강관리(제129조 ~ 제141조)

제129조(일반건강진단)

제130조(특수건강진단 등)

제131조(임시건강진단 명령 등)

제132조(건강진단에 관한 사업주의 의무)

제133조(건강진단에 관한 근로자의 의무)

2.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2019.1.15. 공포, 2020.1.16. 시행)

제134조(건강진단기관 등의 결과보고 의무)

제135조(특수건강진단기관)

제136조(유해인자별 특수건강진단 전문연구기관의 지정)

제137조(건강관리카드)

제138조(질병자의 근로 금지 · 제한)

제139조(유해 · 위험작업에 대한 근로시간 제한 등)

제140조(자격 등에 의한 취업 제한 등)

제141조(역학조사): 조사에 참석할 수 있는 사람 범위 등(추가)

제9장 산업안전지도사 및 산업보건지도사(제142조 ~ 제154조)

제142조(산업안전지도사 등의 직무)

제143조(지도사의 자격 및 시험)

제144조(부정행위자에 대한 제재)

제145조(지도사의 등록)

2.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2019.1.15. 공포, 2020.1.16. 시행)

제146조(지도사에 대한 지도 등)

제148조(손해배상의 책임)

제149조(유사명칭의 사용 금지)

제150조(품위유지와 성실의무 등)

제151조(금지 행위)

제152조(관계 장부 등의 열람 신청)

제153조(자격대여행위 등의 금지)

제154조(등록의 취소 등)

제10장 근로감독관 등(제155조 ~ 제157조)

제155조(근로감독관의 권한)

제156조(공단 소속 직원의 검사 및 지조 등)

제157조(감독기관에 대한 신고)

2.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2019.1.15. 공포, 2020.1.16. 시행)

제11장 보칙(제158조 ~ 제166조)

제158조(산업재해 예방활동의 보조·지원)

제159조(영업정지의 요청 등)

제160조(업무정지 처분을 대신하여 부과하는 과징금 처분)

제161조(도급금지 등 위반업무에 따른 과징금 부과): 10억원 이하 부과

제162조(비밀 유지)

제163조(청문 및 처분기준)

제164조(서류의 보존)

제165조(권한 등의 위임·위탁)

제166조(수수료 등)

2.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2019.1.15. 공포, 2020.1.16. 시행)

제12장 벌칙(제167조 ~ 제175조)

제167조(벌칙): 5년 이내 사망사고로 안전보건조치 위반 자는 그 형의 $\frac{1}{2}$ 까지 가중

제168조(벌칙)

제169조(벌칙)

제170조(벌칙)

제171조(벌칙)

제172조(벌칙)

제173조(양벌규정): 사망사고 시 법인은 10억원 이하의 벌금(추가)

제174조(형벌과 수감명령 등의 병과)

제175조(과태료)

부칙(제1조 ~ 제21조)

3. 산업안전보건법 전부 개정 주요 내용

1. 조문의 체계 정리
2. 법의 보호대상 확대(노무를 제공하는 자 추가)
3. 사내도급 금지
4. 사내도급 승인(위험의 외주화 방지)
5. 원청의 책임범위 및 처벌수준 강화
6. 사망사고 시 사업주의 처벌수준 강화
7. MSDS 작성, 제출, 비공개 심사
8. 이사회 보고 및 승인
9. 그 외 제도 신설, 개선 사항

3-1. 조문의 체계 정리

1. 조문의 개수 변경: 9장 116개 ⇒ 12장 175개
2. 법률 유보 원칙에 맞게 시행규칙에서 정하는 사항을 법으로 상향하여 체계를 정비: (예시)안전 · 보건관리자 증원 · 교체 임명 명령
3. 순서 조정: (예시)금지 · 허가물질, 유해인자 분류 ⇒ 유해인자 분류, 금지 · 허가물질
4. 하나의 조 제목 아래 여러 개 항으로 구성하여 이해하기 곤란하고 매우 복잡한 구조 ⇒ 조문의 기본적인 내용은 동일하게 유지하되, 조문의 내용을 분리하여 별도의 조문으로 구성, 명확화

(예시)제36조(안전검사) 제1항~제9항 ⇒ 제93조~제97조,
제41조(물질안전보건자료의 작성 · 비치 등) 제1항~제11항
⇒ 제110조~제117조

3-2. 법의 보호대상 확대

1. 최근 변화된 노동력 사용 실태에 맞게 근로계약관계에서 벗어나 다양한 고용형태의 노무제공자를 보호대상에 포함
 - 제1조(목적)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작업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근로자” ⇒ “노무를 제공하는 자” 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
· 증진함
 - 제2조(정의) 1. “산업재해”란 “근로자”가 ⇒ “노무를 제공하는 자”가 업무에 ~
- * 개정 전: 근로자
개정 후: 근로자 + 특수형태근로종사자 + 배달종사자
= 노무를 제공하는 자

3-2. 법의 보호대상 확대

2.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및 배달종사자를 사용하는 자를 사업주에 포함시키고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및 배달종사자도 근로자의 의무를 준수토록 함

- 제5조(사업주 등의 의무) ①사업주(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부터 노무를 제공받는 자와 물건의 수거·배달 등을 증개하는 자를 포함)는 근로자(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물건의 수거·배달 등을 하는 일하는 사람 포함)의 안전 및 건강을 증진시켜야 함

3-2. 법의 보호대상 확대

2-1.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안전 및 보건조치 의무 신설 (법 제77조)

-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범위: 현행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직종(9개)과 동일하게
 - ①보험설계사, ②건설기계 운전사, ③학습지교사,
④골프장 캐디, ⑤택배원, ⑥퀵서비스기사, ⑦대출모집인,
⑧신용카드모집인, ⑨대리운전기사
 - 이 중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는 자(5개)
: 건설기계 운전사, 골프장 캐디, 택배원, 퀵서비스 기사,
대리운전기사(주로 육체노동자)
 - 직종별 산재예방에 필요한 안전보건조치를 하여야 함
(안전보건규칙 제672조)

3-2. 법의 보호대상 확대

2-2. 배달종사자에 대한 안전 및 보건조치 의무 신설(법 제78조)

- 이동통신단말장치로 물건의 수거·배달 등을 증개하는 자는 그 증개를 통해 이륜자동차로 물건을 수거·배달하는 자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안전 및 보건조치를 하여야 함
- 안전보건규칙(제673조)에서 증개자에게 의무 부과
 - ① 운전면허 및 보호구 보유 여부 확인,
 - ② 앱을 통하여 도로교통법 제49조에 따른 운전자의 준수사항 등 안전운행 및 산재예방에 필요한 사항에 대한 정기적 고지,
 - ③ 물건의 수거·배달 등에 소요되는 시간에 대해 산재를 유발할 수 있을 정도로 제한해서는 안 됨

3-3. 사내도급 금지

- (내용) 유해 · 위험성이 매우 높아 도급 인가대상이었던
▲ 도금작업 ▲ 수은 · 납 · 카드뮴의 제련 · 주입 · 가공 ·
가열 작업 ▲ 허가물질 제조·사용 작업에 대하여
사내 도급을 금지함 (안전차별 금지)

- (예외) ① 상시 인력의 고용이 어려운 **일시 · 간헐적 작업**과
② 사업 운영에 반드시 필요한 수급인의 **기술활용 목적의
도급**은 예외로 허용하되,
 - 고용노동부장관의 평가와 승인을 받도록 하고,
 - 승인기간은 최대 3년, 연장 · 변경 시에도
승인받도록 함

- (위반 시 조치) 사업주가 이를 위반하여 도급한 경우에는
10억 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함

3-4. 사내도급 승인

- (내용) 자신의 사업장에서 급성 독성, 피부부식성 등이 있는 물질의 취급 등의 **작업**을 도급하는 경우에는 도급인이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함(연장·변경 시에도 승인받도록 함)
- (도급승인 대상**작업**) 현재 시행령 개정 중이며 입법예고안
 - **증량비율 1% 이상의 황산, 불화수소, 질산, 염화수소**를 취급하는 설비를 **개조·분해·해체·철거하는 작업** 또는 해당 설비의 내부에서 이루어지는 **작업**
 - 다만, 도급인이 해당 화학물질을 모두 제거한 후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신고한 경우는 제외
- (위반 시 조치) 사업주가 이를 위반하여 도급한 경우에는 10억 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함

3-4. 사내도급 승인 시 하도급 금지, 적격 수급인 선정 의무

○ 사내도급 승인 받은 후 하도급 금지

-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연장승인·변경승인을 받아 도급한 작업에 대해서는 하도급을 금지
- (위반 시 조치) 사업주가 이를 위반하여 재하도급한 경우에는 10억 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음

○ 적격 수급인 선정 의무

- 사업주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사업주에게 도급하여야 함(임의 규정)

3-5. 원형의 책임범위 및 처벌수준 강화

1. 도급, 도급인, 발주자의 개념을 명확히 함

- **도급**: 명칭에 관계없이 물건의 제조·건설·수리 또는 서비스의 제공, 그 밖의 **업무를 타인에게 맡기는 계약**
 - * 생산설비 유지, 보수작업, 청소, 경비, 식당운영 등 모든 업무는 도급에 해당
- **도급인**: 도급하는 사업주(건설공사발주자 제외)
- **수급인**: 도급인으로부터 물건의 제조·건설·수리 또는 서비스의 제공, 그 밖의 업무를 도급받은 사업주
- **관계수급인**: 여러 단계 도급일 때 모든 수급인
- **건설공사발주자**: 건설공사를 도급하는 자(건설시공을 주도하여 총괄·관리하지 아니하는 자와 도급받은 건설공사를 다시 도급하는 자는 제외)

3-5. 원형의 책임범위 및 처벌수준 강화

2. 도급인의 책임범위 강화

- 도급인이 수급인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조치 책임을 부담하는 범위를
 -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 도급인의 사업장 ▲ 도급인이 제공하거나 지정한 장소로서 시행령 제11조에서 정하는 22개 위험장소에서 작업하는 경우로 규정
- 즉, 도급인이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작업 장소, 시설 등의 위험에 대하여 지배·관리권이 있다면
 - 도급의 유형, 위험장소, 사업의 목적 여부 등에 관계없이 수급인과 동일한 수급인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조치에 대해 책임지도록 함

3-5. 원형의 책임범위 및 처벌수준 강화

4. 원형의 처벌수준 강화

- 이를 위반한 도급인에게는

(개정 전)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 (개정 후)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3-6. 사망사고 시 사업주의 처벌수준 강화

1. 형량 상향

- 도급인이 안전 및 보건조치 의무 위반으로 근로자를 사망케 한 경우 수급인과 동일하게

(개정 전)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 (개정 후)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5년 내 반복 시 ½범위 내 가중

- 법인에 대한 벌금형 상향

(개정 전) 1억원 이하 벌금 ⇒ (개정 후) 10억원 이하 벌금

3-6. 사망사고 시 사업주의 처벌수준 강화

2. 형벌과 수강명령 병과

- 안전 및 보건조치 의무 위반으로 근로자를 사망케 한 자에게 법원에서 유죄 판결(선고유예 제외)를 하는 경우에는 200시간 범위에서 수강명령을 병과할 수 있음
 - 수강명령권자: 법원
 - 수강명령 집행기간: 형의 집행유예 시는 집행유예기간 내, 벌금형 또는 약식명령 시는 형 확정일부터 6개월 이내, 징역형 이상의 실형 시는 형기 내
 - 수강명령 집행자: 벌금형 또는 집행유예와 병과 시는 보호관찰소장, 징역형과 병과 시는 교정시설장
 - 수강내용: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교육, 그 밖에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3-7. MSDS 작성(시행: 2021. 1. 16.)

○ MSDS 작성자 변경

(개정 전) 화학물질을 양도 · 제공하는 자

⇒ (개정 후) 화학물질을 제조 · 수입하려는 자

○ MSDS 기재사항 일부 변경

- 작성 대상: (개정 전) 화학물질 또는 화학물질을 함유한 제제

⇒ (개정 후) 화학물질 또는 이를 함유한 혼합물

- 작성대상 약칭: (개정 전)대상화학물질

⇒ (개정 후) 물질안전보건자료 대상물질

- MSDS 기재내용 중

(개정 전) “1. 대상화학물질의 명칭”

⇒ (개정 후) “1. 제품명”

3-7. MSDS 제출(시행: 2021. 1. 16.)

- 화학물질을 제조·수입하려는 자는 화학물질을 양도·제공하는 자와 고용노동부장관에게 MSDS를 제출
- 별도 제출 자료: MSDS에 기재하지 않은 구성성분(유해성·위험성 미분류 물질)이 있는 경우 화학물질의 명칭·함유량
- MSDS 또는 MSDS에 기재하지 않은 구성성분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사업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3-7. MSDS 비공개 심사(시행: 2021. 1. 16.)

1. 물질안전보건자료의 일부 비공개 승인 등

- MSDS상 구성성분의 명칭 및 함유량을 비공개하려는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의 사전승인을 받도록 하고 (비공개 심사 업무는 안전보건공단에 위탁함)
 - 비공개 승인을 받더라도 노출 시 유해성·위험성을 유추할 수 있도록 대체명칭 및 대체함유량을 기재
- 고용노동부장관은 화학물질 명칭과 함유량의 대체 필요성 및 MSDS의 적정성 등을 검토하여 비공개 승인 여부 결정, 통보

3-7. MSDS 비공개 심사(시행: 2021. 1. 16.)

2. 물질안전보건자료의 일부 비공개 승인 등

- 비공개 승인 제외대상 물질 및 승인기준은 노·사합의에 따라 결정될 수 있도록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심의위원회에서 심의
- 승인의 유효기간은 5년, 5년 단위로 연장
- 비공개 정보의 제공 요구권자 확대
(개정 전) 의사, 보건관리자(보건관리전문기관), 산업보건의, 근로자대표
⇒ (개정 후) 추가: 역학조사 위탁기관,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3-8. 이사회 보고 및 승인(시행: 2021. 1. 1.)

- 내용: 대표이사는 연간 안전 및 보건계획 수립 ⇒ 이사회 보고 · 승인(위반 시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 성실히 이행
- 목적: 최고경영자인 대표이사의 안전 및 보건에 대해 관심을 갖도록 일정한 의무를 부담
- 대상: 상시근로자 500명 이상 회사, 전년도 시공능력평가액 순위 1,000위 이내 건설회사
- 안전 및 보건계획 수립 시 포함하여야 할 내용
 - ①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경영방침
 - ② 안전·보건관리 조직의 구성·인원 및 역할
 - ③ 안전·보건 관련 예산 및 시설 현황
 - ④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전년도 활동실적 및 다음 연도 활동계획

3-9. 그 외 제도 신설, 개선 사항

1. 정부 책무(법제4조)에 “직장 내 괴롭힘 방지를 위한 조치기준 마련, 지도·지원” 신설
2. 안전보건표지 설치·부착: 외국인근로자 사용 시 해당 외국인 근로자의 모국어로 작성(위반 시 5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II. 정책방향

II. 정책방향

2022년까지 산재 사망사고 절반 감축

- 목표: 사고사망만인율 0.53 → 0.27,
사고사망자 1,000여 명 → 500명 이하 달성

- 추진 내용
 - * 국무조정실: 국민생명 지키기 추진단 운영
 - ※ 국민생명 지키기 3대 프로젝트 추진
 - * 고용노동부·안전보건공단: 산재 사망사고 감축 TF
 - * 국토교통부: 공공 건설공사 견실시공 및 안전관리 강화 방안 시행, 공공 건설공사부터 시스템비계 사용 의무화(추락 예방)
 - * 자치단체: 산재 사망사고 감축 목표 설정, 추진계획을 고용노동부에 제출
 - * 지방노동관서: 건설업(목표관리제), 서비스업(5대 핵심 위험업종 관리), 제조업(고위험 사업장 집중관리 등)
 - * 산업안전보건법령 전부개정

II. 정책방향

🛑 지난해, 사망자 855명으로 2018년 대비 116명 감소

한겨레

2020년 01월 09일 목요일 010면 사회

작년 산재 사망 줄었지만...그래도 855명

지난해 산업재해 사고로 숨진 노동자가 모두 855명으로 집계됐다. 관련 통계를 작성한 1999년 이후 가장 큰 폭으로 사망자 수가 줄어, 처음으로 800명대를 기록한 것이다. 정부가 사고 사망을 줄이기 위한 정책을 지속해온 결과지만, 그 수를 절반으로 줄이겠다는 문재인 정부의 공약을 지키기엔 아직 역부족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8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어 “2019년 산재 사고 사망자는 855명으로, 2018년보다 116명(11.9%) 감소했다”고 밝혔다. 2018년 7월부터 산재보험 적용 범위가 2천만 원 미만 건설 공사로 넓어지면서 이 분야 사망자 수(16명)를 포함한 결과인데도, 사고 사망자 수는 역대 최대 폭으로 줄었다. 상시 노동자 1만명당 사고 사망자 수의 비율인 ‘사고 사망 만인율’도 처음으로 0.45~0.46‰로 떨어질 것으로 추정됐다. 2018년 사고 사망 만인율은 0.51‰였다.

산재 사고 사망이 가장 많은 건설업에서는 지난해 428명이 숨져, 한해 전보다 사망자 수가 57명 줄었다. 노동부는 지난해 감독

20년 만에 최대폭 11.9% 감소
공사장 추락 등 건설업 57명 줄고
50인 미만 제조업은 9명 늘어

대상을 확대(5500여곳→7961곳)하는 한편, 추락 방지용 일체형 작업 발판 지원을 늘리고 안전보건공단과 함께 소규모 건설 현장을 매일 점검·감독하는 순찰 점검반을 가동했다. 그 밖에 제조업에서 11명(217~206명), 기타 업종에서 48명(269~221명)의 사망자가 줄었다. 다만 제조업의 50명 미만 사업장에서는 9명 늘었다. 노동부는 올해 순찰 점검반을 제조업으로 확대해, 컨베이어벨트 등 위험기계를 많이 보유한 산업단지의 사업장 3만여곳을 점검할 계획이다.

노동계는 정부의 노력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우려를 접지 않았다. 한인임 일과건강 사무처장은 “전체 사고 사망이 줄어든 것은 환영할 일이지만, 제조업 순찰 점검을 (정부 목표보다) 대폭 확대하는 등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은 “정부 목표대로 2022년까지 산재 사망자 수를 절반으로 줄이려면 안전관리자 선임 범위를 50명 미만 사업장으로 확대하고,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전면 도입하는 등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조혜정 기자 zesty@hani.co.kr



II. 정책방향

🚒 금년, 패트롤점검 6만곳으로 확대(건설, 제조 각 3만곳)

이데일리

2020년 01월 09일 목요일 010면 경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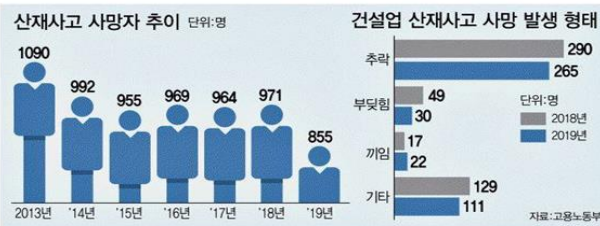
건설업 집중 감독 효과... 작년 산재사고 사망 855명 '역대 최저'

정부의 적극적인 산업재해 사망사고 예방노력이 성과를 거뒀다. 지난해 산업재해 사고사망자 수가 116명 줄어 800명대에 처음으로 진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통계 작성 이래 가장 큰 폭의 감소다. 사고사망의 절반을 차지했던 건설업에서 사고사망자 수가 줄어든 영향이 컸다. 정부는 올해 건설업 추락사고를 비롯해 사망사고가 많이 발생하는 제조업 끼임사고를 중점 감독할 계획이다.

고용부 2019 산업재해 통계 발표

전년비 116명 ↓...800명대 첫 진입
건설업 추락·부딪힘 두자릿수 줄어

올해는 제조업 끼임사고 감독 강화
컨베이어벨트 보수 중단 집중 점검



산재사고 사망자 감소폭 역대 최대

8일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2019년 산업재해 사고사망자 수(잠정) 관련 통계와 2020년 사업장 관리·감독방향에 따르면 지난해 산재 사고사망자 수는 855명으로 전년(971명)보다 11.8%(116명) 감소했다. 사고사망자수 감소폭이 100명을 넘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사고사망자 통계를 작성한 1999년 이후 감소폭이 가장 크다.

사고사망 만인율(노동자 1만명 당 사고사망자 수 비율)은 0.51퍼밀리아드에서 0.45~0.46퍼밀리아드로 감소했다.

이재갑 고용부 장관은 "사고사망자는 처음으로 800명대가 됐고, 사고사망만인율 역시 최초로 0.4대에 진입했다"고 설명했다.

업종별로 보면 건설업은 57명, 제조업은 11명, 기타업종 48명 등 업종 전반에서 사고 사망자 수가 감소했다. 특히 사고사망의 절반을 차지하는 건설업은 485

명(2018년 기준)에서 428명으로 줄었다. 고용부는 건설업의 경우 중·소규모(3~120억원)의 현장 중심으로, 추락·부딪힘 사고사망자 수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고용부는 건설업 감독 대상을 확대하고 추락 등 위험요인 중심으로 점검한 결과 산재 사고사망자 수가 감소했다고 평가했다. 고용부는 지난해 11월 기준 7961곳을 감독해 3386곳은 사법처리하고, 1600곳은 과태료를 부과했다. 또 추락예방 효과가 입증된 일체형 작업 발판 지원을 확대하는 등 건설현장 추락사를 예방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였다.

제조업의 경우 사고 사망자 수는 217명(2018년)에서 206명(2019년 잠정)으로 11명 감소했다. 건설업종에 비해 사고사망자 감소폭 작은 것은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에서 사고사망자 수가 9명 증가한 영향이다.

고용부는 올해 건설업 추락과 제조업 끼임사고를 중점적으로 감독한다는 방침이다. 고위험 기계 등을 감독하고 컨베이어 안전 점검 등 끼임 위험작업에 대한 감독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패트롤 점검 제조업까지 확대

또 건설업에 집중했던 순찰(패트롤) 점검·감독을 제조업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지난해 건설현장 3만곳 제조업 6000곳을 순찰했으나 올해는 건설현장 3만곳, 제조업 3만곳 총 6만곳으로 늘릴 계획이다. 현장 실태 점검에 따른 산재 감소 효과가 상당했다는 판단에서다.

제조업의 경우 컨베이어 벨트·혼합기·식품제조용 설비·파쇄분쇄기·사출기·프레스·산업용 로봇 등 7대 위험기계를 보유한 산업단지를 중심으로 방호조치나 노동자 안전 절차 인지 여부 등을 집중 점검할 예정이다.

고용부는 영세·소규모 사업장은 자율적으로 개선하도록 이끌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소규모 사업장은 안전 관리 정보나 인력이 열악하기 때문에 점검 후 충분한 계도기간을 부여하기로 했다. 일체형 작업 발판이나 추락 방지 매트, 엘리베이터 작업 전용 발판 등을 개발·지원하기로 했다.

올해부터 원청의 책임이 대폭 강화된 개정 산업안전보건법이 시행되면 앞으로 사망사고 감소에 상당한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된다.

이 장관은 "핵심 국정과제인 '2022년까지 사망사고 절반 감축'을 달성할 수 있도록 올해에도 100명 이상 산재 사고사망자 수 줄이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기업도 '안전은 비용이 아닌 노동자의 기본 권리'라 생각하고 현장에서 안전 우선 원칙이 뿌리내리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김소연 기자 sykim@

II. 정책방향

고용노동부 안산지청

○ “기계기구, 비금속광물 및 금속제품제조업” 의 산업재해 예방에 집중

- (사유) 지난해 관내 제조업 재해자 1,242명 중 786명(63.3%) 차지
- (대상) 근로자수 30 ~99명 사용 사업장 425개소
- (방법) 사업장별 안전보건관계자가 합동으로 자체점검하고,
개선 계획서를 작성하여 그에 따라 개선.
이때, 자체점검표, 개선계획서, 개선완료를 보고하도록 함
- (참고) 관련 자료가 안산지청 홈페이지-정보공개-부서별 자료실
중 연번 706번에 있음

Q & A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